

환경친화적 기업의 지정을 위한 심사방법 및 기준

환경부는 환경친화업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환경과 부역을 연계하는 국제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키위해 그 심사방법과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1. 목 적

환경부 예규 제122호(95. 4. 14)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성 평가 및 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심사하여 환경친화 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2. 심사방법

가. 평가방법 및 배점

평가방법은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제(100점 만점)를 채택한다.

배점은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환경성 평가 65점, 환경개선계획 35점을 기준으로 개선계획서 평가표(덧붙임 1)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합산한다.

다만, 평가항목(세부사항)중 해당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최종점수 산출시 당해 분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절차

심사위원장은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개선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지방) 환경관리청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의 환경관리실태(환경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발생가능성, 환경법규 준수현황, 지도·점검실적, 배출허용기준 준수수준, 환경관리상태 등)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현지실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업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등을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정한다.
- 현지실사 결과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심사위원은 개선계획서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덧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구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환경친화기업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환경친화기업은 최종점수가 75점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위원장은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여부를 해당기업에게 개선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구분	세부사항	점수	비고
경성평가 (65)	일반현황 (19)	물질수지의 투명성	6	
		원료, 자재사용의 효율성 및 청정 생산공정 도입 여부	11	
		입지평가	2	
	환경오염관리 (28)	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배출허용기준 달성 정도*	20	
		폐기물관리	5	
		기타 환경관리	3	
	환경사고 및 민원현황 (5)	환경사고, 민원현황, 법규 위반사례 등	5	
환경관련활동 (13)	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13		
환경개선계획 (35)	환경개선실적 및 계획 (31)	환경보전 기본원칙	2	
		환경개선목표 및 이행방안	29	
	기타 (4)	환경전담부서 보강	2	
		기업활동의 환경친화성 확대	2	

* 배출허용기준 달성정도 평가는 덧붙임 2 참조

개선계획서 평가표

1. 환경성 평가(65점)

구분	항목	세부사항	확인내용	평가	
				등급	점수
일반 현황 (19)	· 생산공정 (공정흐름도) (17)	· 물질수지의 투명성	· 제품으로 생산되는 비율과 유실·손실 및 부산물(폐기물) 발생정도에 대한 정확성	우수	6
				보통	3
				불량	0
				우수	3
		· 사용되는 원료·공정·자재의 환경영향정도	· 에너지, 용수, 원재료 사용의 효율성	우수	3
				보통	2
				불량	0
				우수	3
	· 청정생산공정 도입 여부	· 공정내용 및 원·부자재에 대해 환경적 영향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오염물질 감량화 정도	우수	8	
			보통	4	
· 입지평가 (2)	· 공장입지의 환경평가	·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학교, 주택가 등과의 거리 및 영향 가능성 정도)	우수	2	
			보통	1	
			불량	0	

구분	항 목	세 부 사 항	확 인 내 용	평 가	
				등급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 출입차량 등에 의한 먼지, 냄새, 진동 등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 · 사업장의 녹화정도 · 지하수 이용상황, 상수원에 대한 영향 		
환경 오염 관리 (28)	·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배출허용기준 초 과달성 정도 (20)	· 방지시설의 규모 및 관리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성능	우수	4
			· 방지시설 고장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들에 대한 세부조치계획 수립여부	보통	2
			· 관련 시설물, 기자재의 정상가동 상태	불량	0
		· 배출허용기준 대비 오염물질의 최종 배 출상태	· 상시측정체계 구축여부 및 대응 방안	우수	16
			· 대기, 수질(특정, 일반) 오염물질 농도 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대비 비교	불량	0
			·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우수	3
	· 폐기물관리 (5)	· 폐기물 관리의 적정 성	· 발생폐기물에 대한 현황 파악	보통	2
			· 자가처리의 적정성 또는 위탁처리시 관리의 적정성	불량	0
			· 운반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현장으로 부터 폐기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계획 수립 여부		
		· 폐기물 재활용	·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우수	2
			· 감량화	보통	1
				불량	0
· 기타 환경관리 (3)	· 화학·유독물질 관리	· 사용, 발생하는 양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우수	3	
		· 화학·유독물질 보관시설의 적정성	보통	2	
		· 관리인 교육실시 여부	불량	0	
	· 국제협약의 준수 사항	· 독성이 적은 물질로의 전환계획 등 개 선·방안			
		· CO ₂ , CFC, Halon, CITES 등 규제품 목의 사용 및 발생량 정도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상태			
· 비산먼지·악취 등	·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				
	· Off-site 환경성 관리	· 오염물질 발생현황 처리상태			
	· 보관·운송 관련장비의 효율성 입증 및 유지관리·점검 체계 확인	· 점검내용에 의한 적절한 개선·대책 절 차수립 여부			

구분	항 목	세 부 사 항	확 인 내 용	평 가	
				등급	점수
환경 사고 및 민원 현황 (5)	· 환경사고, 법규 위반 사례 등 (5)	· 환경사고 및 민원 현황 · 법규 위반사례, 배출 부과금 부과실적 등	· 최근 3년간 환경사고, 민원발생 내용, 발생횟수 및 대응조치, 개선사항 · 법규위반 내용 및 횟수 · 배출부과금 납부횟수, 금액 및 이후의 개선사항 등	우수	5
				보통	3
				불량	0
환경 관련 활동 (13)	· 기업활동의 환경 친화성 (13)	· 환경관리체계의 조직과 권한정도 · 지역사회를 위한 환 경보전활동	· 환경관리 실무자와 생산관리자와의 업무연계체계의 구축 여부 ·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내용 · 1사1하천 정화운동, 1사1산 가꾸기운 동 등에 대한 참여도 · 기업환경정보의 공개 · 환경활동 후원 여부 · 식목활동 등 · 사업장의 환경교육장 활용	양호	2
				미흡	0
		· 협력업체 환경관리	· 1사1하천 정화운동, 1사1산 가꾸기운 동 등에 대한 참여도 · 기업환경정보의 공개 · 환경활동 후원 여부 · 식목활동 등 · 사업장의 환경교육장 활용 · 환경관련 공조체제 구축여부 · 외부협력업체 선정시 환경관련사항 검토 여부와 주기적인 관리확인 실시 등	우수	5
				보통	3
		· 환경상품 관련사항	· 환경마크상품 개발 또는 사용 현황 · 재활용품 사용현황	불량	0
				양호	2
		· 과대환경표현·광고	· 환경마크상품 개발 또는 사용 현황 · 재활용품 사용현황 · 그림, 녹색, 무공해 등 과장 상표 광 고, 표현 여부	미흡	0
				양호	2
				미흡	0

2. 환경개선 계획(35)

구분	항 목	세 부 사 항	확 인 내 용	평 가	
				등급	점수
환경 개선 실적 및 계획	· 환경보전기본원칙 (2) · 전년도까지의 실적	· 환경보전에 관한 최 고 경영자의 실천의 지 · 정량적인 환경개선 효과	· 환경보전기본원칙 수립 및 생활화 정 도(사보, 출입구 및 사무실 게시, 모임 시 낭독여부 등) · 계획년도별 전략적 목표 · 개선목표대비 개선효과 추진실적	양호	2
				미흡	0
				-	-

구분	항 목	세 부 사 항	확 인 내 용	평 가	
				등급	점수
(35)	· 환경개선목표 및 이행 (29)	· 환경개선 목표	· 환경성 평가에 기초한 정량적인 개선 목표의 정도	우수	5
			· 지속적인 환경개선(재사용, 감량화, 재활용 등) 여부	보통	3
			· 불량	0	
		· 청정 생산공정의 도입을 통한 오염저감	· 청정연료로의 전환, 생산설비 교체, 원재료 등 투입물질의 변경 등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노력	우수	15
			· 제품 및 포장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 내용 등	보통	7
			· 청정기술개발 또는 도입여부	불량	0
		· 폐수재이용, 염료 및 용제 등 회수 재이용도 등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 노력	· 개선된 방지시설 종류 및 처리효율 개선 내용	우수	6
			· 방지시설 개선 등의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관리방법의 개선을 통한 오염저감	보통	3
			· 불량	0	
		· 투자계획 추진일정	· 개선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우수	3
			· 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추진일정의 적정성	보통	2
			· 불량	0	
기타 (4)	· 환경전담부서 보강계획 (2)	· 환경관련조직을 포함한 전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부여의 합리성	· 조직의 각 부서별 책임과 기능에 대한 정상시와 비정상시의 역할 구축 여부	우수	2
			· 환경관리체계 감사 프로그램 수립 여부와 감사내용	보통	1
			· 환경관리체계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배분 내용	불량	0
		· 비상사태를 대비한 조치계획	· 비상사태의 종류와 현황 파악 여부	우수	2
			· 비상시의 업무처리 절차, 사후관리방법 및 행동요령 제정과 교육 실시 등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수립 여부	보통	1
			· 불량	0	
· 기업활동의 환경 친화성 확대계획 (2)	·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보전활동	· 1사1하천 정화운동, 1사1산 가꾸기운동 등 지역에 대한 영향정도	우수	2	
		· 지역사회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극성	미흡	1	
		· 불량	0		

구분	항 목	세 부 사 항	확 인 내 용	평 가	
				등급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환경관리 · 환경마크 상품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환경교육장 활용 · 사업장 주변 녹지 조성 · 환경관련 공조체제 구축여부 · 외부협력업체 선정시 환경관련사항 검토 여부와 주기적인 관리확인 실시 등 · 환경마크 상품 취득 또는 사용 현황 · 재활용품 사용 현황 		

배출허용기준 대비 오염물질 최종 배출상태 평가기준

분 야	$\frac{\text{처리후 배출농도}}{\text{배출허용기준}} \times 100$		배 정				비 고
			60%미만 , { 40%이상	40%미만 { 30%이상	30%미만 { 20%이상	20%미만	
			미흡	보통	보통	우수	
대 기	특정유해물질(해당항목)		1	2	3	4	· 수질, 대기분야 복합의 경우에는 각각 평가 합산한다.
	일반오염물질(SO ₂ , 먼지)		1	2	3	4	
수 질	특정유해물질	“나”지역배출 허용기준적용	1	2	3	4	· 특정유해물질과 일반오염물질 이 동시에 배출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일반오염물질	원폐수의 BOD, COD중 높은 지표 적용	1	2	3	4	

※ 1. 처리후 배출농도는 실측자료로 한다.

2. 특정유해물질과 일반오염물질은 사업장내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중 최고농도 배출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